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6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노3261 저작권법위반
피 고 인	A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민정, 황준성(기소), 홍혁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명근(국선)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25. 5. 14. 선고 2024고정262, 2024고정1388(병합)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24.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의 판매 사이트에 게시된 피해자 회사들의 사진들은 'K' 프로그램을 통해 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6

고인이 구매대행하려는 상품들이 자동으로 등록된 것이어서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구체적인 상품 등록 내역을 알 수 없었고, 위 자동등록 프로그램의 운용방식에 대하여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저작권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문제된 피해자 회사들의 사진들은 상품의 홍보사진 이미지인바 피사체의 충실한 재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을 뿐 촬영자의 개성과 창조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들의 사진들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사진저작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저작권법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구체적인 사정들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의 사정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6-06-16

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은교 _____

판사 이은빈 _____

판사 오상용 _____